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및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 신설〉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79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74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개 요

【정성호의원안】

- 1. 제안 경위 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해식의원안】

- 1. 제안 경위 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정성호의원안 제37조의2제1항) 5
- 2.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 신설
(이해식의원안 제27조의9 신설) 16

I. 개 요

【정성호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6. 3.

다. 회부연월일 : 2023.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해식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6. 12.

다. 회부연월일 : 2023. 6.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정성호의원안 제37조의2제1항)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3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 ¹⁾ 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u>500억원</u>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 ----- ----- <u>1천억원</u> ----- ----- ----- ----- ----- ----- ----- ----- ----- ----- ----- -----.
1. ~ 5. (생략) ²⁾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등이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³⁾로서, 타당성 조사의 결과⁴⁾는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 1)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가.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생략)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43면, 2022. 9.
- 4)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는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포함됨.
 - ①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시행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 자료로서 기능함. 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에 있음.

타당성 조사 제도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실시되었는데, 2014년 제도 도입 당시에도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임.

연도별로 실시된 타당성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실시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16건, 2019년에는 68건, 2023년에는 110건이 실시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타당성 조사 건수]

연도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타당성 조사 건수	16건	68건	76건	65건	62건	110건
총사업비 500억원 ~1,000억원	8건 (50%)	30건 (44.1%)	36건 (47.4%)	33건 (50.8%)	26건 (41.9%)	62건 (56.4%)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8건 (50%)	38건 (55.9%)	40건 (52.6%)	32건 (49.2%)	36건 (58.1%)	48건 (43.6%)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500억원으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약 2배 증가한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상향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② 재무성 분석: 현금흐름할인법 시행

③ 정책적 타당성 분석: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 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국가 및 지방예산과 명목GDP 현황]

(단위 : 조 원)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명목GDP	1,638	1,833	2,007	2,058	2,324	2,401
국가예산	274.7	295.7	330.8	386.2	455.8	484.4
지방예산	163.6	184.6	210.6	253.2	288.3	305.4

※ 자료: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한국은행 「국민계정」

개정안은 제도 도입 이후 확대된 경제 규모 및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행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2배 확대된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위의 표 [연도별 타당성 조사 건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연도별로 약 41% ~ 56%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타당성 조사가 생략되면 투자심사 기간 및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 보임.

다만, 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의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더라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며⁶⁾, 2024년 기준으로 500억원은 작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 조사 대상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되더라도 1,000억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조사를 충실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2년 기준 지방채무잔액은 40조 8,000억원에 달하고,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비율이 감소하는 등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 상황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시·군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⑨ (생략)

6) 예를 들어, 2023년 11월 3일에 KBS에 방송된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는 “혈세 먹는 하마 - 지역 랜드마크 사업 실태 보고”를 주제로 다루고 있음.

이 문제되는 상황에서⁷⁾ 타당성 조사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유인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3년에 실시된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된 사업에는 도시개발 사업, 나들목(IC) 설치사업, 공원 조성 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체육센터 건립사업,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동물원 조성사업, 종합병원 건립사업 등이 있음(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아래 참고자료 1-2 참조).

한편, 개정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08호, 2024년 5월 30일 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관리 등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상기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도 함께 참고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지방 투자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이 예상되므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행정안전부,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2024. 3.

8)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이 유보되는 등의 효과를 발생하는 반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 1-1

2015년 타당성 조사 실시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총사업비 (단위:억원)
1	울산 본청	울산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	553
2	경기 평택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22,070
3	강원 춘천시	춘천시 시청사 건립사업	900
4	서울 본청	서울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사업	628
5	경기 성남시	성남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1,410
6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3,801
7	충북 청주시	홍덕구청사 건립사업	623
8	경남 창원시	창원 평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522
9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2,668
10	경남 본청	한내-덕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960
11	서울 본청	서울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655
12	서울 본청	서울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사업	868
13	서울 동작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1,944
14	경기 본청	지방도 371호선[적성-두일] 도로 확포장사업	1,126
15	경북 김천시	김천1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1,572
16	제주 본청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건립사업	700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 1-2

2023년 타당성 조사 실시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총사업비 (단위:억원)
1	서울 본청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사업	12,024
2	서울 본청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823
3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96
4	인천 본청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2,648
5	경기 군포시	군포시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778
6	경기 시흥시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12,022
7	경기 용인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282
8	경기 용인시	용인시 동백지구 나들목(IC) 설치사업	876
9	경기 용인시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615
10	경기 화성시	화성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1,289
11	충북 충주시	충주예술의전당 건립사업	738
12	충북 충주시	충주시 연수 금곡마을~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	1,069
13	충남 본청	충남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979
14	충남 천안시	천안 불당도서관 건립사업	822
15	충남 아산시	(가칭)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1,277
16	전남 본청	전남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사업	1,924
17	전남 광양시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609
18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825
19	제주 제주시	제주 남조봉공원 조성사업	1,465
20	제주 제주시	제주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1,004
21	제주 제주시	제주 서부공원 조성사업	720
22	서울 본청	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	552
23	서울 본청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입램프 설치	895
24	서울 본청	장승배기로 확장	651
25	서울 본청	서서울 문화플라자 조성	956
26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차장 복합개발	528
27	부산 본청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2,112
28	부산 본청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3,077
29	경기 평택시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1,394
30	경기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건설공사	1,298
31	강원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5,451
32	충북 본청	충북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505
33	충북 본청	충북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586
34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668
35	충남 천안시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도로개설공사	725

구분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총사업비 (단위:억원)
36	경남 본청	지방도 1023호선 구양~월평	836
37	경남 본청	지방도 1080호선 옥천~고라 도로건설공사	678
38	경남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조성사업	550
39	부산 본청	제주 본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143
40	전북 본청	전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135
41	부산 본청	부산 본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143
42	서울 본청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구간 건설	3,134
43	서울 본청	서울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920
44	서울 본청	서울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5,926
45	서울 본청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사업	603
46	인천 본청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	691
47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679
48	대전 본청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984
49	대전 본청	대전 제2수목원 조성사업	1,150
50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578
51	경기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03
52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1,499
53	경기 여주시	여주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1,366
54	충남 본청	충남 지방도624호(인주-염치)확포장 공사	1,791
55	충남 천안시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조성사업(3차)	592
56	충남 천안시	천안역사 증개축사업	800
57	전북 남원시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582
58	서울 본청	서울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	2,017
59	경남 진주시	진주시 제2금산교 가설 사업	1,182
60	서울 본청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1구간)	631
61	서울 본청	서울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5,674
62	서울 본청	서울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6,423
63	부산 본청	英로알리셀스쿨 부산캠퍼스 조성사업	984
64	인천 본청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확장 및 복원사업	3,496
65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1,020
66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울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2,850
67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1,512
68	경기 부천시	부천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50
69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미금로(중로1-302호) 확포장공사	798
70	경기 평택시	평택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714
71	경기 평택시	평택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	3,971
72	강원 강릉시	강릉 해안변 공원 녹지화(경포2지구)조성사업	2,386
73	강원 강릉시	강릉 해안변 공원 녹지화(경포3지구)조성사업	824

구분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총사업비 (단위:억원)
74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	669
75	충북 옥천군	옥천군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664
76	충남 본청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2,807
77	전북 본청	전북대표도서관 건립사업	600
78	전북 전주시	전북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연계건립사업	783
79	전남 여수시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1,165
80	경북 경주시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787
81	제주 본청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626
82	부산 본청	부산 사상재생사업지구 경쟁력 강화사업 타당성 조사	590
8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공공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758
84	강원 정선군	정선군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1,094
85	경기 고양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312
86	서울 본청	서울 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714
87	서울 본청	서울 창업허브구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729
88	광주 본청	광주 송정 근린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1,181
89	광주 본청	광주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840
90	충북 청주시	청주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561
91	전남 여수시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874
92	경남 남해군	남해군 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200
93	경남 합천군	합천군 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836
94	제주 본청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696
9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417
96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068
97	경기 여주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452
98	전남 광양시	광양세풍산단~광양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581
99	전남 무안군	무안군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921
100	경북 성주시	성주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1,147
101	서울 강동구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860
102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554
103	강원 강릉시	강릉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881
104	강원 인제군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916
105	충남 서산시	서산시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1,915
106	충남 논산시	논산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668
107	전북 익산시	익산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586
108	경북 상주시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1,408
109	경북 청도군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940
110	경남 거창군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644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 1-3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구분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국가재정법」 제38조	
제도 도입 시기	2014년	1999년	
목적	신규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재정투자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지원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부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수행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총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조세제정연구원(KIPF)
		R & 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의뢰/요구 시기	분기별(4회/1년)	분기별(4회/1년)	
대상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시·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수행절차	조사의뢰(자치단체)→선정(사업설명회)→약정체결→타당성 조사→조사결과 통보→투자심사→심사결과 통보	조사의뢰(주무부처)→선정(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예비타당성조사→조사결과통보	
비고	타당성 조사의 경우, 정책적 분석을 자치단체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연구진이 설정하여 분석함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다기준분석(AHP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정책적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함	
의사결정 방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 여부(AHP≥0.5)	
사후관리	투자사업 이력관리	총사업비 관리제도	
매뉴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 신설(이해식의원안 제27조의9 신설)

개정안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기 위한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 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략) ② ~ ⑧ (생략) <u><신설></u>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 ----- ----- ----- <u>-이하 이 조에서-</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9(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u> ① <u>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시·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u> <u>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u>

	<u>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1. <u>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u> 2. <u>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u> ③ <u>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u> 1.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 2. <u>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u> ④ <u>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⑤ <u>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의2⁹⁾는 종전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9)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 ⑧ (생략)

다만,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¹⁰⁾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등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유사한 예로, 「지방자치법」 제166조¹¹⁾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분쟁 등의 조정 및 협의사항 조정에 필요한 사항

10)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 ⑦ (생략)

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¹²⁾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호¹³⁾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17개 시·도에서 조례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의 업무 범위 조정 또는 위원회 위원 재구성¹⁴⁾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은 지방자치의 영역이므로 법률보다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¹⁵⁾

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부칙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14) 개정안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기초 지자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보조금법」과 위임 조례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광역 지자체의 공무원(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 1,000만원(연평균 1억 200만원)으로 추계¹⁶⁾된다는 의견임.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7조의9 신설)	102	102	102	102	102	5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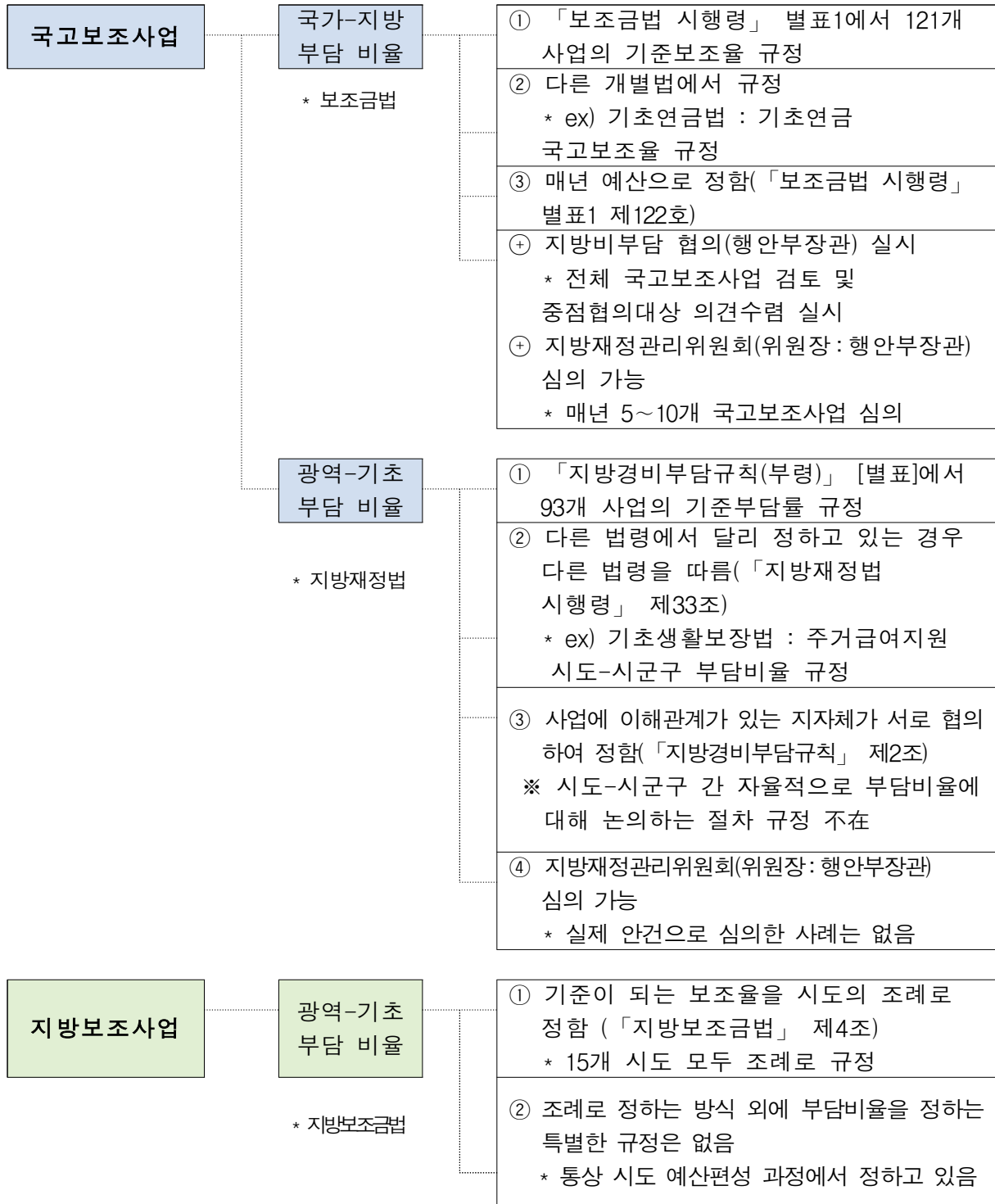
02) 6788-5338

15) 현재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16)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안 제27조의9에 따른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의 구성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위원회를 17개 시·도에 설치·운영하며, 각각 20명의 위원(위촉위원 12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가정함.

참고 2-1

국고 및 지방 보조사업 부담비율 결정 방식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 2-2

지방보조금 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관련 조례현황

구 분	조례명(경비부담 기준 조항)	비 고
서 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 §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2)	95개 사업(시행규칙 별표1)
부 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일반공공행정(30~50%), 교육(30~50%) 문화·관광(30~100%) 등
대 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보건·사회(30~70%), 산업·경제(30~50%), 도로·교통(30~50%) 등
인 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33)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4)	34개 사업(시행규칙 별표1)
광 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	일반공공행정(30~70%), 교육(20~50%) 문화·관광(30~100%) 등
대 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보건·복지(50~100%), 산업·경제(30~100%), 도로·교통(50~100%) 등
울 산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보건·복지(30~70%), 문화체육(40~70%), 농·축산(30~50%) 등
경 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보건·사회(30~70%), 산업·경제(30~50%), 도로·교통(30~70%) 등
강 원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3)	일자리·경제(20~50%), 복지(~20%), 공공시설(20~50%) 등
충 북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2)	91개 사업 규정(시행규칙 별표)
충 남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	보조율 30% 이상 원칙
전 북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5)	보조율 30%를 기준으로 함
전 남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3)	‘기준보조율을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 북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보조율 30% 이상 원칙
경 남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	보건·사회(20~50%), 산업·경제(30~50%), 도로·교통(30~50%) 등

※ 자료 : 행정안전부